#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	2005. 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■ 개정사유

- 2005. 7. 1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됨으로 거창군정조 정위원회의 농업관련 위원이 배제되어 있음.
-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정책의 의견제시와 방향설정 등 농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■ 주요골자

○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· 구성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 제3항)

## ■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제2항제1호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"를 "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3항중 "각 실과장"을 "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<u>각 실과장</u> 으로 하며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당연직 위원은 <u>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</u> <u>장</u> 으로 하며